## C - 06 - 2015

- (3) 타일 보양 및 청소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  - (가) 타일의 보양 및 청소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에 부합하는 안전모, 보안경, 안전화,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적정 지급 및 착용한 상태로 작업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.
  - (나) 타일의 보양 및 청소작업 시에는 타일의 탈락으로 인한 낙하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타일의 종류, 뒷발모양 등에 따른 접착 강도를 확보한 후 수행 하도록 한다.
  - (다) 바닥타일 보양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행판 등을 깔고 보행하여야 한다.
  - (라) 직사광선 및 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트 및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작업은 날리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로프를 설치하고, 추락 등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작업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마) 공업용 염산, 타일 접착제 등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물질의 유해·위험성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작업 전 반드시 숙지 시켜야 한다.
  - (바)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염산 등 세척제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기준에 의거하여 당해 물질의 유해성 및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게시토록 한다.

## 6. 타일철거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
- 6.1 기구 및 기계
  - (1) 수동
  - (가) 망치, 해머
  - (나) 드라이버, 정, 노루발 등